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공적 인물이 아닌 자를 명예훼손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Gannet v. Re
11 Med. L. Rptr. 2327 (1985. 6. 10)

사실개요

발명가인 원고(Ronald Re)가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동력자동차(the air-powered car)를 발명하고 그 시범을 보였다. 그 시범에서 원고는 시동을 거는데 많은 애를 먹었지만, 결국 출발하여 시속 10 마일로 1/4 마일을 주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약 2년 후 원고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자 피고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그 마지막 문단에서 「원고는 2년전 공기동력자동차 시범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을 유혹하여 모이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특정적 손해, 일반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피고의 승소의 평결을 지시할 것(directed verdict)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당하였다. 1심판사는 또한 원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법률상의 문제로서 기각하게 한 후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결하게 한 결과, 배심원들은 1백 33만 5천달러의 원고승소 평결을 하였다. 1심판사는 피고의 책임에 관한 원고승소의 배심평결은 유지하였으나 그 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심리를 명하였다. 이 명령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1심판결을 모두 승인하였다.

판결요지

1. 에너지위기는 공공의 관심사항일 수는 있어도 공공의 논쟁(public controversy)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동력자동차를 발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공공논쟁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공공인물(Public figure)이라고 할 수 없다.

2. 공공인물이 아닌 사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신문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경과실(negligence)이다.

3. 단순한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한 허위보도의 입증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허만 대법원장, 호세이 및 크리스터 대법원판사가 합의부로 심리하고 크리스터 대법원판사가 의견을 밝힌다 :

원고 로널드 레이(Ronald Re)가 피고들인 가넷트사와 그 기자 데이빗 프레스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뉴캐슬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특정적(specific), 일반적(general), 그리고 징벌적(punitive)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배심원들은 원고승소의 평결을 내리면서, 1 백 33 만 5 천 달러의 보상적인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위 평결에 불구하고 판결(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신청하면서, 선택적으로 위 평결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하거나 또는 손해액을 삭감할 것(remittitur)을 신청하였다. 1 심은 피고들의 책임에 관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유지하였으나 손해액에 관하여는 그 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손해액에 대하여만 새로 심리하도록 명하였다. 당사자들은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쌍방 상소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우선 1 심이 피고승소의 평결을 명하지 않고 또한 나중에 평결에 불구하고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공공인물이 아니고 이 경우 신문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적 발표를 피하는 것이라는 1 심의 판시를 다룬다. 원고는 1 심이 배심원들의 평결액을 취소한 것과 원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결하게 함이 없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결론은 1 심의 조치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재량을 남용한 바는 없다는 것으로서, 그 모든 판시를 인용하는 바이다.

1 심의 방대한 증거설시와 판결이유에 비추어 우리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들을 그대로 인용한다. 로널드 레이(레이)는 발명가이다. 레이씨는 1977년 1월 압축공기에 의하여 동력을 받는다고 발표된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당시 계속중인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그 개념은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고용한 PR 회사에 의하여 보도자료가 준비되었다. 이 자료는 언론사 직원들에게 원고의 발명과 앞으로 다가올 시범을 알려주었다. 뉴스저널사는 필라델피아의 존 F. 케네디 운동장에서 열린 시범에 기자와 사진사를 내보냈다. 그날은 몹시 춥고 성애가 많이 낀 날이었다. 기자들이 주위에 모여있는 동안 시범 책임자들은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레이씨가 서너번의 발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와 조수들은 자동차를 밀거나 다른 차의 밧데리와 연결하여 시동을 걸려고 해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결국 약 반시간이 지난 후 원고가 압축공기탱크를 바꾸고 나서야 출발시킬 수 있었다. 자동차는 시속 10 마일의 속도로 존 F. 케네디 주차장 주위를 1/4 마일 가량 움직였다. 그 다음날 뉴스저널사와 수개의 다른 신문사들이 각 신문에 이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이 기사들은 원고가 시동을 거는데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였지만 자동차가 현실로 작동하였다고 모두 언급했다. 약 2년반 후에 원고는 증권사기, 절도, 절도미수 및 음모를 포함한 19 개의 중범 및 경범죄로 기소되게 되었다. 이들 혐의는 원고가 그 해 초경에 자동차의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개발한 「마일데크」 연료조절장치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원고가 그 계획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던 방법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이다. 피고 신문사의 기자인 데이빗 프레스톤은 이 기소에 관련된 기사를 쓰도록 할당받았다. 그는 우선 원고에 관하여 예전에 출간된 기사들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는 2년전에 있었던 공기동력자동차 시범에 관한 두 스크랩을 찾아냈다. 각 기사는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프레스톤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그 기소에 관하여 논의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원고, 원고의 조수,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를 만나러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제소된 문제의 기사는 그 다음날 아침의 뉴스저널에 보도됐다. 그 기사는 기소에 관련된 사실들을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원고의 예전의 공기동력자동차 시범을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2년전 레이씨는 압축공기로 간다는 자동차 시범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을 유혹하여 존 F. 케네디 운동장에 모이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우선 먼저 레이씨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공공인물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적 인물(private figure)에 관한 기사를 출간하는 출판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는 두가지 쟁점이 문제가 된다. 사람이 어떠한 경우 공공인물로 간주되는가에 관하여 종합적인 원칙이 정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은 우리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논급을 제공한 바 있다. 거츠 대 로버트 웰치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종류의 공공인물을 논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공공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자는 사회적 사건에 있어 특별히 현저한 지위를 스스로 떠맡은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매우 설득력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에 있어서 공공인물로 간주된다. 더 일반적으로 공공인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공공논쟁(public controversy)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그들은 모두 관심과 논평을 자초하였다.」

피고들은 위 후자에 기초하여, 레이씨가 이 사건에 관계된 논쟁에 스스로 나섰다기 때문에 「제한된」 공공인물이라고 주장한다. 판례법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레이씨가 관여한 공공의 쟁점, 즉 에너지위기를 사실상 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1심판사의 판시에 동조한다. 에너지 위기는 공공의 관심사항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서는 「서로 반대되는 견해들 사이의 논쟁(dispute)」이라고 정의되는 분쟁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연방대법원은 거츠사건에서 그전에 로젠블룸 대 메트로메디아사 사건에서 판시했던 일반적 공공관심의 기준을 명백히 파기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논쟁이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레이씨는 연료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언론사가 그 시범에 참석한 것은 분쟁이나 논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은 공공의 관심 내지 공공경비의 사안의 공공의 분쟁이 아니라고 한 허친슨 대 프록스마이어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하다. 원고가 공공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심은 레이씨와 같은 사적 인물에 대하여 신문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결정하여야만 했다. 피고들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또는 「중과실」(gross irresponsibility)의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출판업자가 과실로 명예훼손적 사항을 발간하면 책임이 있다는 1심 판시 및 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준에 동의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기사의 필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이 더욱 타당하다. 피고들은 1심판사가 피고들의 「지시된 평결」(directed verdict) 신청과 그 후의 「평결에 불구하고 판결」(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률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청들은 피고가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libel Proof) 출간된 기사가 실질적으로 진실하다는 서로 관련되면서도 다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한 피고의 명예훼손책건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문제된 기사의 잘못된 부분이 원고의 명성을 기사의 나머지 부분이 손상한 것보다 더 손상하였는지 여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떤 기사가 실질적으로 진실한지(substantially true)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기사가 일반 독자의 마음에 있어 진실한 보도보다 원고의 명성에 손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의 일환으로 법원은 기사의 요지 또는 요점(gist or sting)이 진실한가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점들에 관한 1심판사의 판시를 긍정한다. 피고들은 그들의 실질적 진실의 항변으로서 자동차가 거듭 시동에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속 10마일로 겨우 1/4마일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정확히 묘사했다면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실패했다」고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보다 원고를 더 손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피고들은 그 기사가 본질적으로는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지시된 평결(그리고 평결에 불구하고 판결)의 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1심은 증거를 피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사실과 추론이 합리적인 사람을 오직 한가지 결론(신청인 승소)에 이르게 할 것인 경우, 오직 그 때에만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배심원들의 평결이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면, 평결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한 결과 우리는 문단이 허위이고, 진실된 보도를 하였더라면 원고에 명예가 덜 손상되었으리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우선 재판중에 피고 대리인과 수명의 피고 종업원들은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사실대로 보도하자면 자동차가 결국 시동이 걸렸다는 사실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 기사는 레이가 사기, 허위표시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고는 그 기소에 관한 보도에 마지막 문단을 보충함으로써 레이가 이전에도 사기적이었다고 암시하여, 설명된 혐의의 유효성에 대한 평석을 추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 신문기사가 주요한 대부분에 있어 정확하기 때문에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근거한 피고의 지시된 평결 내지 평결에 불구한 판결 신청을 기각한 1 심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짓는다. 사실관계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원고의 예전의 시범에 관한 마지막 문단이 원고의 명성을 훨씬 더 손상하였다고 배심원들이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있다. 레이씨 세금 및 증권 전문가인 로버트 고프 변호사, 그리고 기계 및 항공공학 전문가인 짐머만 교수는 모두 레이씨의 명성이 실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그 마지막 문단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어떻게 보더라도 법원이 피고의 책임여부의 결정을 배심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허용한 정확한 것이다. 원고는 1 심판사가 그 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배상액의 결정을 취소하는데 있어 취한 두가지 기준이 법률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증거의 비중의 기준(weight of the evidenc test)은 배심원이 책임결정을 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고, 「과다물기준」(excessiveness test)은 배심원들의 평결액을 재심사하는 경우에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1 심법원이 후자의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액의 합당성(appropriateness)만을 심사하였더라면 받았을 관대한 기준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검토해보니 1 심은 이 사건의 사실을 심사함에 있어 적절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 1 심의 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심은 그와 같이 판시함에 있어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사건에서 실시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이 없이 보통법상의 악의(common law malice)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주가 현실적 악의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명예훼손에 있어 징벌적 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추가적 부담을 가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의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증 못하였기 때문에 위 쟁점은 이론적 흥미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 증거들을 원고측에 가장 유리하게 검토하더라도 피고의 행동은(1 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부주의한 것(carelessness)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법상의 악의나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승인한다.